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제출연월일 : 2009. 9. .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본문과 맞게 개정함

○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겸직 또는 겸직 변경이 있을때 의장에게 신고

○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영리행위의 제한을 규정함(안 제6조)

○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을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의원” 을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 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월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원

(인)

거창군의회회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u>	<u>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5.(생략)	제2조(윤리강령)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1.~ 5.(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 2009.10.2] 제35조제3항, 제35조제6항